

## 0 상임심판제도 운영 내규 개정(안)

### □ 개정사유

- (제도개선) 상임심판 교체 및 배정, 활동일수 관련 '23년도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도출한 평가 기준 및 적용방안, 기타 운영지침을 본 내규에 반영
- (자구수정) 상임심판은 매년 회원종목단체와 11개월 단위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심판활동을 하고 있음. 그러나 운영 내규 상 일부 용어는 고용된 근로자로 불여지가 있어 법률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위임계약 형태를 명확히 하고자 함

### □ 주요내용

- (제도개선) 매년 종목별 하위 20% 교체, 인원 배정 및 활동실적 기준 개편

구분	내용
의무교체	· (당초) 하위 15% 3회 누적 또는 연속 2회 → (변경) 매년 종목별 하위 20%
인원배정	· 자진 사임인 경우, 결원 발생한 해당 종목으로 우선 배정
활동일수	· 심판배정 최대 165일, 교육 및 연구 20일 의무화, 사전 심판 회의 활동일수 불인정

- (자구수정) 상임심판은 매년 회원종목단체와 ‘스포츠경기 심판’ 관련 특정 사무 처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고 있으므로 관련 내용 수정 필요

구분	내용
삭제	· 휴직, 정년, 징계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사항이므로 삭제
수정	· (민법) 위임계약에서 쓰이는 용어로 변경 * “수당” → “보수”, “복무” → “사무” 등

### □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개정사유
<b>제 1 장 총 칙</b>	<b>제 1 장 총 칙</b>	
<b>제1조(목적)</b> 이 지침은 상임심판 채용, 계약, 복무 및 <u>수당</u> 등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‘상임심판제도 운영’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,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.	<b>제1조(목적)</b> 이 지침은 상임심판 채용, 계약, 복무 및 <u>보수</u> 등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‘상임심판제도 운영’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,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.	- 자구수정

현행	개정(안)	개정사유
<b>제 2 장 채용</b>	<b>제 2 장 채용</b>	
<b>제5조(공정채용의 원칙)</b> ① ~ ④ (생략) ④ 종목단체는 <u>입사지원서</u> , 면접 등 채용 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 ⑤ <u>상임심판 면접 시, 체육회 소관 부서장 또는 체육회 심판위원회 위원 또는 정책과학원에서 평가하거나 참관·감독할 수 있다.</u>	<b>제5조(공정채용의 원칙)</b>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④ 종목단체는 <u>상임심판 지원서</u> ,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 ⑤ <삭제>	- 자구수정  - 제7조 5항 이동
<b>제6조(채용시험의 단계)</b> 채용시험은 <u>제1차 서류, 제2차 면접 전형</u> 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, <u>제1차 전형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</u>	<b>제6조(채용시험의 단계)</b> 채용시험은 <u>종목단체의 서류 및 면접, 종목단체 심판위원회의 최종 면접</u> 으로 실시한다.	- 자구수정
<b>제7조(선발의 방법)</b> ① <u>서류 지원자가 채용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, 5배수 로 1차 합격자를 선정하고, 2배수 내외로 면접 실시 후 최종 선발한다. 서류 지원자가 10배수 미만인 경우에는 전원 1차 합격자로 선정하고, 2배수 내외로 면접 실시 후 최종 선발한다.</u> ② <u>면접위원단은 종목단체 심판위원회 위원(장)을 포함한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</u> ③ <u>최종 합격자는 종목단체 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한다.</u> ④ (생략) <신 설>  <신 설>	<b>제7조(선발의 방법)</b> ① <u>종목단체는 서류 심사로 채용인원의 5배수 내, 면접 심사로 채용인원의 2배수 내로 합격자를 선정한다. 종목단체 심판위원회는 최종면접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.</u> ② <u>종목단체의 면접은 심판위원회 위원(장)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실시한다.</u> ③ <삭제> ④ (현행과 같음) ⑤ <u>종목단체별 상임심판 면접 시 체육회 소관 부서장, 체육회 심판위원회 위원, 정책과학원 연구원이 참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.</u> ⑥ <u>5항의 경우, 체육회가 면접 위원 지정 후 종목단체에 안내한다.</u>	- 자구수정  - 자구수정 - 1항 내용 중복  - 종전 제5조 5항 내용 추가  - 절차명시

현행	개정(안)	개정사유
<b>제8조(선발기준)</b> ① ~ ② (생략) ③ 상임심판은 해당 연도 만 25세 이상 60세 이하 및 종목별 국내 심판 연령 <u>제한 규정</u> 에 불일치되지 않는 자로 한다.	<b>제8조(선발기준)</b>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상임심판은 해당 연도 만 25세 이상 60세 이하 및 종목별 국내 심판 연령 <u>규정을 충족한</u> 자로 한다.	- 자구수정
<b>제9조(응시자의 제출서류)</b> 상임심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<u>선발 지원서</u> (별지 제1호서식)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목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.	<b>제9조(응시자의 제출서류)</b> 상임심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<u>상임심판 지원서</u> (별지 제1호서식)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목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.	- 자구수정
<b>제 3 장 계약</b>	<b>제 3 장 계약</b>	
<b>제12조(채용계약)</b> ① 상임심판의 계약은 체육회 최종 승인 후 종목단체와 상임심판(개인사업자)의 <u>업무위탁 방식으로</u> 체결한다. ② ~ ④ (생략) ⑤ <u>상임심판이 출산, 육아 및 부상 등으로 휴직할 경우, 해당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기간 동안 대체인원을 채용할 수 있다.</u> <신설>	<b>제12조(채용계약)</b> ① 상임심판의 계약은 체육회 최종 승인 후 종목단체와 상임심판(개인사업자)의 <u>위임계약 방식으로</u> 체결한다.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<삭제> ⑥ <u>제26조 1항에 의거하여 대체인원 채용계약은 제6조~8조, 제12조 1항을 따른다.</u>	- 자구수정 - 계약과 무관한 내용 삭제 - 대체인원 채용계약 내용 추가
<b>제14조(계약해지)</b> ① 제11조에 따라, 상임심판 결격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될 때에는 <u>업무위탁계약을</u> 해지한다. ② 상임심판이 자진 사퇴하거나 제11조 결격사유 또는 제34조 평가에 의한 교체를 제외하고는 종목단체가 임의로 계약 해지할 수 없다. ③ (생략) ④ 상임심판이 개인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<u>퇴직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</u> 별지 제4호 서식의 <u>사유서</u> 를 종목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. ⑤ 종목단체는 상임심판의 <u>사직서</u> 접수	<b>제14조(계약해지)</b> ① 제11조에 따라, 상임심판 결격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될 때에는 <u>위임계약을</u> 해지한다. ② 상임심판이 <u>계약해지를 요청</u> 하거나 제11조 결격사유 또는 제34조 평가에 의한 교체를 제외하고는 종목단체가 임의로 계약 해지할 수 없다. ③ (현행과 같음) ④ 상임심판이 개인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<u>퇴직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</u> 별지 제4호 서식의 <u>계약해지 요청서</u> 를 종목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. ⑤ 종목단체는 상임심판의 <u>계약해지요청서</u>	- 자구수정 - 근로자 적용사항 수정 - 근로자 적용사항 삭제 - 자구수정

현행	개정(안)	개정사유
<p>즉시,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⑥ <u>상임심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, 정년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, 7월에서 12월 사이의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 연 계약 해지한다.</u></p> <p>⑦ (생략)</p> <p>1. 상임심판이 계약 및 상임심판 관련 <u>모든</u>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</p> <p>2. ~ 4. (생략)</p> <p>5. <u>개인평가 결과 하위 15% 3회 누적 또는 연속 2회인 경우</u></p> <p>⑧ (생략)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7.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상임심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퇴직이 결정되었을 때</p>	<p>접수 즉시,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⑥ &lt;삭제&gt;</p> <p>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상임심판이 계약 및 상임심판 관련 <u>모든</u>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매년</u> 개인평가 결과 <u>종목 내 하위 20%인 경우</u>(단, 하위 20% 산출 불가한 4명 이하 종목은 3년 주기 해지)가. 상기 5호의 계약해지 대상인 종목 내 하위 20%에는 <u>계약해지요청</u> 인원을 포함한다.</p> <p>⑧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&lt;삭제&gt;</p>	<p>- 근로자 적용사항 삭제</p> <p>- 자구수정</p> <p>- 교체방침 변경</p> <p>- 자구수정</p>
<b>제15조(퇴직)</b>	<b>제15조(퇴직) 삭제</b>	-근로자 적용사항 삭제
<b>제 4 장 복 무</b>	<b>제 4 장 사 무</b>	
<p><b>제16조(의무사항)</b></p> <p>① ~ ④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설&gt;</p>	<p><b>제16조(의무사항)</b></p> <p>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교육 및 연구 활동은 연간 각각 10일 이상 하여야 한다.</u></p>	- 실적 기준 개편
<p><b>제18조(활동일수 기준)</b></p> <p>1. 심판배정</p> <p>가. ~ 나. (생략)</p> <p><u>다. 국제대회, 전국규모대회의 경우 대회 주최 측에서 개최하는 대회 공식 심판회의 또는 교육 일정을 심판배정 활동으로 인정한다. 단, 대회에 배정된 전체 심판을 대상으로 하는 공식 일정이어야 하며, 회의 개최 및 참석 관련 증빙자료를 필수(주최 측 직인 날인)</u></p>	<p><b>제18조(활동일수 기준)</b></p> <p>1. 심판배정</p> <p>가. ~ 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다. &lt;삭제&gt;</p>	- 실적 기준 개편

현행	개정(안)	개정사유
<p><u>로 제출한다.</u></p> <p>라. 심판배정의 경우 원활한 심판활동을 위한 사전이동 필요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이동일수를 추가 인정<u>한다.</u></p> <p>1) 국외개최 국제대회(<del>또는 교육</del>): 심판배정(<del>교육</del>)기간 + 2일(출국일/입국일) 2) ~ 3) (생략)</p> <p><u>마. 연습경기는 월 최대 5일로 제한한다.</u></p> <p>바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 <p>2. 교육 및 연구 활동 가. ~ 다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	<p>라. 심판배정의 경우 원활한 심판활동을 위한 사전이동 필요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이동일수를 추가 인정<u>하되, 평가 실적으로는 간주하지 않는다.</u></p> <p>1) 국외개최 국제대회(<del>또는 교육</del>): 심판배정(<del>교육</del>)기간 + 2일(출국일/입국일) 2) ~ 3) (현행과 같음)</p> <p>마. &lt;삭제&gt;</p> <p>바. (현행과 같음)</p> <p>사. 심판배정일수는 연 최대 165일(11개월×15일)까지 허용하되, 종목단체와 상임심판 간 협의하는 조건으로 추가할 수 있다.</p> <p><u>아. 제19조 3항에 따라 종목단체 주관인 아닌 타 기관 심판활동으로 보수를 받을 시, 상임심판의 심판활동 일수로 인정하지 않는다.</u></p> <p>2. 교육 및 연구 활동 가. ~ 다. (생략)</p> <p><u>라. 국제연맹(국외 개최) 심판 자격 교육에 참가하는 경우, 해당 교육기간과 이동일수 2일을 활동실적으로 인정한다.</u></p> <p><u>마. 연습경기는 종목단체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며, 월 최대 5일로 제한한다.</u></p>	<p>- 실적 기준 개편</p> <p>-자구수정(삭제)</p> <p>- 실적 기준 개편</p> <p>- 실적 기준 개편</p> <p>- 관련조항 정정, 종전 29조 7항 이동</p> <p>- 실적 기준 개편</p>
<p><b>제19조(검직 기준)</b></p> <p>② 심판배정 및 경기 판정과 무관한 타 분야 <u>일체의</u> 직업은 허용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월 10회 이내로 제한하며, 외부활동 신고서(“별지 13”)를 <u>사무처</u>에 제출한 경우 인정</p>	<p><b>제19조(검직 기준)</b></p> <p>② 심판배정 및 경기 판정과 무관한 타 분야 <u>일체의</u> 직업은 허용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월 10회 이내로 제한하며, 외부활동 신고서(“별지 13”)를 <u>종목단체</u>에 제출한 경우 인정</p>	<p>- 자구수정</p> <p>- 자구수정</p>
<p><b>제21조(징계의 종류 및 효력)</b> (생략)</p> <p><b>제22조(징계양정의 기준)</b> (생략)</p> <p><b>제23조(징계사유)</b> (생략)</p>	<p><b>제21조(징계의 종류 및 효력)</b> &lt;삭제&gt;</p> <p><b>제22조(징계양정의 기준)</b> &lt;삭제&gt;</p> <p><b>제23조(징계사유)</b> &lt;삭제&gt;</p>	<p>- 근로자 적용사항 삭제</p>

현행	개정(안)	개정사유
<p><b>제24조(징계절차)</b> (생략)</p> <p><b>제26조(휴직)</b></p> <p>① 상임심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, 휴직할 수 있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② 상임심판의 휴직기간은 휴직일로부터 최대 6개월로 한다.</p>	<p><b>제24조(징계절차)</b> &lt;삭제&gt;</p> <p><b>제26조(위임 정지)</b></p> <p>① <u>종목단체는 상임심판이 출산, 육아 및 부상 등 개인사정으로 위임 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위임을 정지할 수 있으며, 정지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한다.</u></p> <p>1. ~ 2. &lt;삭제&gt;</p> <p>② <u>1항의 경우 해당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기간 동안 대체인원을 채용할 수 있다.</u></p>	<p>- 자구수정</p> <p>- 자구수정 및 근로자 적용사항 삭제</p> <p>- 종전 제12조 5항 내용 추가</p>
<b>제 5 장 수 당</b>	<b>제 5 장 보 수 와 비 용</b>	- 자구수정
<p><b>제27조(수당의 결정)</b></p> <p>상임심판 <u>수당</u>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.</p>	<p><b>제27조(보수의 결정)</b></p> <p>상임심판 <u>보수</u>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.</p>	<p>- 자구수정</p> <p>- 자구수정</p>
<p><b>제28조(수당지급)</b></p> <p><u>수당</u>은 매월 10일에 상임심판 본인 계좌로 지급한다. 다만, 그 지급일이 휴일이나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.</p>	<p><b>제28조(보수지급)</b></p> <p><u>보수</u>는 매월 10일에 상임심판 본인 계좌로 지급한다. 다만, 그 지급일이 휴일이나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.</p>	<p>- 자구수정</p> <p>- 자구수정</p>
<p><b>제29조(지급기준)</b></p> <p>① <u>수당</u>의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,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기본<u>수당</u> 외에 <u>근속연수</u>를 고려하여 20만원씩 차등 지급한다.</p> <p>④ 상임심판은 <u>수당</u>에 대한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부담하며, 종목단체는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.</p> <p>⑤ ~ ⑥ (생략)</p> <p>⑦ <u>제5항</u>에 따라 종목단체 주관이 아닌 타 기관 심판활동으로 <u>수당</u>을 받을 시, 상임심판의 심판활동 일수로 인정하지 않는다.</p>	<p><b>제29조(지급기준)</b></p> <p>① <u>보수</u>의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,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기본<u>보수</u> 외에 <u>경력</u>을 고려하여 <u>별도의 추가 보수</u>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④ 상임심판은 <u>보수</u>에 대한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부담하며, 종목단체는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.</p> <p>⑤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&lt;삭제&gt;</p>	<p>- 자구수정</p> <p>- 자구수정</p> <p>- 자구수정</p> <p>- 자구수정</p> <p>- 제18조 이동</p>

현행	개정(안)	개정사유
<b>제 6 장 종목 및 인원 배정</b>	<b>제 6 장 종목 및 인원 배정</b>	
<b>제30조(배정 원칙 및 방법)</b> ① (생략) 1. (생략) 2. <u>자진 사임</u> 에 의한 결원 발생 시 ② 종목 및 인원은 사업예산 확보, <u>자진 사임</u> , 평가결과 및 징계에 의한 결원 발생 시 종목별 적정 인원 수(쿼터제) 기준에 따라 배정하되, 신규종목을 우선 고려한다.	<b>제30조(배정 원칙 및 방법)</b> ① (현행과 같음) 1. (생략) 2. <u>계약해지요청</u> 에 의한 결원 발생 시 ② 종목 및 인원은 사업예산 확보, <u>차관 사임</u> , 평가결과 및 징계에 의한 결원 발생 시 종목별 적정 인원 수(쿼터제) 기준에 따라 배정하되, 신규종목을 우선 고려한다. <u>다만, 계약해지요청인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한 해당 종목에 우선 배정한다.</u>	- 인원배정 방침 변경 (제외)  - 인원배정 방침 변경, (단서조항 추가) 자구수정
<b>제 7 장 평가</b>	<b>제 7 장 평가</b>	
<b>제32조(평가원칙)</b> ① (생략) ② <u>상임심판 개인 및 단체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연간 대회일수 110일 이상 종목과 110일 미만 종목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한다.</u> ③ 정책과학원 개인평가는 계약기간 실적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. 1. 심판활동일수 100분의 <u>60</u> 2. 실적보고서 100분의 20 3. 종목단체 <u>평가위원회</u> 100분의 <u>20</u>	<b>제32조(평가원칙)</b> ① (현행과 같음) ② <삭제> ③ 정책과학원 개인평가는 계약기간 실적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. 1. 심판활동일수 100분의 <u>70</u> 2. 실적보고서 100분의 20 3. 종목단체 <u>심판위원회</u> 100분의 <u>10</u>	- 평가방침 변경  - 평가기준 변경 - 평가기준 변경
<b>제34조(평가활용)</b> ① ~ ② (생략) ③ 체육회는 정책과학원의 상임심판 개인 및 단체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평가 점수가 낮은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패널티를 부여한다. 단, 사전예고 및 협의를 통해 <u>시행 여부를 결정하며, 세부기준은 제32조 제5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</u> 1. 개인: 개인평가 결과 <u>하위 15% 3회 누적 또는 연속 2회인 경우</u> 2. 단체: <u>위 개인평가 미달자 배출 종목</u>	<b>제34조(평가활용)</b>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체육회는 정책과학원의 상임심판 개인 및 단체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평가 점수가 낮은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패널티를 부여한다. 단, <u>사전예고 및 협의를 통해 시행 여부를 결정하며, 세부기준은 제32조 제5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</u> 1. 개인: <u>매년</u> 개인평가 결과 <u>종목별 하위 20%인 경우(활동기간 1년 미만자 예외)</u> (단, 하위 20% 산출 불가한 4명 이하 종목은 3년 주기 교체) 2. 단체: <u>단체평가 결과 2년 평균 순위가</u>	- 교체방침 변경  - 자구수정, - 교체방침 변경

현행	개정(안)	개정사유
<p><u>중</u>, 단체평가 2년 평균 순위가 최하위 단체는 상임심판 추가 배정 배제 등 패널티 부여</p> <p>3. <u>개인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된 심판은 계약해지 지정일로부터 3년간 상임심판에 지원할 수 없다.</u></p> <p>④ 체육회는 제3항에 의거, 매년 상임심판 개인 및 단체 평가결과 확정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종목단체에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통지한다.</p> <p>1. 개인평가: <u>1회(주의), 누적 2회(경고), 누적 3회(교체), 연속 2회(교체)</u></p> <p>2. 단체평가: 추가 배정 인원 배제(경고) 등 패널티에 관한 사항</p>	<p>최하위인 경우</p> <p>3. &lt;삭제&gt;</p> <p>④ 체육회는 제3항에 의거, 매년 상임심판 개인 및 단체 평가결과 확정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종목단체에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통지한다.</p> <p>1. 개인평가: <u>개인별 등급, 교체 대상자</u></p> <p>2. 단체평가: <u>단체 순위</u>, 추가 배정 인원 배제(경고) 등 패널티에 관한 사항</p>	<p>- 교체방침 변경</p> <p>- 평가내용 추가</p>
<b>제 8 장 사 업 운 영</b>	<b>제 8 장 사 업 운 영</b>	
<p><b>제36조(사업승인 및 예산)</b></p> <p>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체육회는 종목단체에 사업 예산(<u>수당</u>, 일반 사업비 등)을 분기별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, 필요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</p>	<p><b>제36조(사업승인 및 예산)</b>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체육회는 종목단체에 사업 예산(<u>보수</u>, 일반 사업비 등)을 분기별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, 필요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</p>	<p>- 자구수정</p>
<p><b>제44조(비상운영)</b></p> <p>① 각종 전염병, 재난 재해 등으로 대회가 공식적으로 취소될 경우, 상임심판의 업무 연속성과 <u>수당</u> 삭감 방지를 위해 비상운영 체제로 전환한다.</p> <p>② 비상운영은 대한체육회 심판위원회의 결을 <u>통해 사무처에서 발령하고</u> 해제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.</p> <p>③ 비상운영 시에는, 연습경기 횟수 제한을 해제하거나 연구 및 교육활동으로 대체하는 등 별도 방침을 통해 상임심판의 업무 연속과 <u>수당</u> 지급을 보장한다.</p>	<p><b>제44조(비상운영)</b></p> <p>① 각종 전염병, 재난 재해 등으로 대회가 공식적으로 취소될 경우, 상임심판의 업무 연속성과 <u>보수</u> 삭감 방지를 위해 비상운영 체제로 전환한다.</p> <p>② 비상운영은 대한체육회 심판위원회의 결을 <u>거쳐</u> 발령하고 해제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.</p> <p>③ 비상운영 시에는, 연습경기 횟수 제한을 해제하거나 연구 및 교육활동으로 대체하는 등 별도 방침을 통해 상임심판의 업무 연속과 <u>보수</u> 지급을 보장한다.</p>	<p>- 자구수정</p> <p>- 자구수정</p> <p>- 자구수정</p>
<p><b>제45조(관리)</b></p> <p>② 종목단체는 신규채용, <u>퇴직</u>, 징계 등 상임심판 신분변동에 대하여는 체육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45조(관리)</b></p> <p>② 종목단체는 신규채용, <u>계약해지</u>, 징계 등 상임심판 신분변동에 대하여는 체육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- 자구수정</p>

현행	개정(안)	개정사유
<p>&lt;신설&gt;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부 칙(2024. 00. 00.)</b></p> <p><b>제1조(시행일)</b> 이 내규는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<b>제2조(경과조치)</b> 제34조 제3항에 따른 의무교체는 2024년 평가결과부터 적용한다.</p>	<p>- 시행시기 표기</p> <p>- 평가시행 표기</p>

별첨: 상임심판제도 운영 내규 개정(안) 전문